

제413회 임시회
'23. 11. 29.(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정일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7일

3. 제안사유

-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구성,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최근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³⁾, 충청북도의 학교폭력 발생률 또한 전국적인 추세와 다르지 않음.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경찰청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2020년 589건, 2021년 827건, 2022년 917건)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있는 경미한 사안과 드러나지 않은 사안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음⁴⁾.
- 이에 증가하고 있는 도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와 교육청, 경찰청을 비롯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

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교육부, 2023.4).

4) 충청북도교육청 내부자료

례가 아니라 충청북도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조례에 해당하므로 목적에서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타당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용어정의를 가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용어 정의 개정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추후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의 용어정의를 다시 개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관련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정의를 조례에 재규정하는 것보다 안 제2조와 같이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 향후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하고 법률과 조례의 해석에 대한 논란 발생 소지를 방지하여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함.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제5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8항은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법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법과 시행령에 혼재되어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5조와 제6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한정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기능도 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관련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불명확함.
- 이에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료히 규정한 것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짐.

다. 종합 검토의견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교육 및 사안 발생시 적극적인 처리 및 피해자 지원,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이 중요하지만 이를 학교 현장의 역할만으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적극 직원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